

LG유플러스와 서울디자인재단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IoT 협력사업에 관한 제휴계약서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유플러스”)와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은 디자인 창조산업·지식의 발신지인 “DDP”의 효율적 운영과 방문객에게 한 차원 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IoT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IoT 협력사업」에 대한 제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유플러스”와 “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IoT 협력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제휴를 진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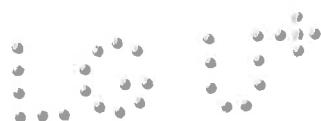
제2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양 당사자는 “본건 사업”이 상호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전폭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본 계약서가 정하는 의무와 업무의 수행, 내용의 수정 및 변경, 분쟁의 해결 등 사업제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의성실과 상호협력의 정신에 입각한 동반자로서 각자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양사는 효과적인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상호 통보하며, 그 조직의 장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적용 범위는 본 계약에 한한다.

- “DDP”란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번지에 소재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의미한다.
- “미러미디어”라 함은 “유플러스”가 “DDP”의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에 설치한 “DDP” 홍보/안내 영상 및 광고 영상을 재생하는 11대의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의미한다.
- “DDP Application”이란 “DDP”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실내 Navigation 서비스, 스마트 도슨트 서비스 등 “DDP” 이용과 관련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과 서비스 관리를 위한 관리자용 웹페이지를 의미한



다.

4. “미러미디어 Application”이란 “DDP”에 설치한 “미러미디어”에 미러미디어용 컨텐츠를 재생하는데 필요한 컨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용 웹페이지를 의미한다.

제4조 (“본건 사업”的 내용)

1. “재단”은 “DDP” 내에 “본건 사업”을 위한 장소 및 전기, 인터넷 회선 등을 제공하며, “DDP” 내에 설치된 비콘, 비콘 게이트웨이, “미러미디어”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2. “유플러스”는 “본건 사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하며, “DDP Application”과 “미러미디어 Application”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제5조 (양 당사자의 역할)

1. “유플러스”의 역할
 - 1) “유플러스”는 “본건 사업”을 위하여 “DDP Application”과 “미러미디어 Application”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한다.
 - 2) “유플러스”는 계약기간 동안 “DDP Application” 및 “미러미디어 Application”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2. “재단”의 역할
 - 1) “재단”은 “본건 사업”에 필요한 “DDP” 내에 비콘, 비콘 게이트웨이, “미러미디어” 운영을 위한 장소, 전기, 인터넷 회선 등을 제공한다.
 - 2) “재단”은 “DDP” 내에 비콘, 비콘 게이트웨이, “미러미디어” (단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 3) “재단”은 “미러미디어” 및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송출할 컨텐츠(동영상, 음성, 텍스트, 이미지 등)를 제작, 관리 및 운영한다.
 - 4) “재단”은 “본건 사업”的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고, 컨텐츠 운영, 설치물 도난방지 등에 책임이 있으며, “본건 사업”的 홍보 및 DDP 내의 안내 등은 서로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조건)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9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양 당사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본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재단”은 “본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나 “유플러스”는 계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를 통해 “DDP”내에 설치된 비콘, 비콘 게이트웨이, “미러미디어” 및 “DDP Application”的 소유권을 계약기간 만료 이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유플러스”는 비콘, 비콘 게이트웨이, “미러미디어”, “DDP Application”을 계약 기간 만료 당시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이전하고(추가 적인 개발 또는 수정은 제공하지 않음), 이전하는 장비를 이용한 사업 계속을 위해 필요한 서버 및 이관에 필요한 추가 개발 비용은 “재단”이 확보하여야 한다.

“재단”은 “DDP Application”的 도보 네비게이션 기능 및 “미러미디어 Application”的 영상 송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플러스”의 서버에 접속 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유플러스” 이외의 유, 무선 통신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단”이 “본건 사업”的 계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재단”에서 비콘, 비콘 게이트웨이, “미러미디어”를 인수하고 관리한다.

제7조 (철거)

- “DDP” 내에 설치하는 비콘, 비콘 게이트웨이, “미러미디어”的 소유권은 “유플러스”에게 있으며, 양 당사자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재단”은 계약기간 만료 후 비콘, 비콘 게이트웨이, “미러미디어”的 소유권은 DDP에 귀속된다.
- “재단”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DDP Application”을 이용한 사업 계속을 위해 필요한 서버 및 이관에 필요한 추가 개발 비용은 “재단”이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상업적 활용)

- “유플러스”는 “DDP”내에서 설치하는 비콘, 비콘 게이트웨이, “미러미디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단”은 “유플러스” 이외의 제3자에게 이를 허용할 수 없다.
- “유플러스”는 전항의 장비와 시스템을 상업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동대문 지역 상권 활성화와 “DDP”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단”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9조 (비용부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비용 또는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다.

제10조 (지식재산권)

1. “유플러스”는 본 계약기간 동안 “본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단”的 지식재산권을 사전 협의 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한 각자의 기술 및 시스템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3. 본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그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하고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독점적 제휴관계)

“재단”은 계약기간 동안 “유플러스”에게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하며, 제3자와 “본건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제휴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1. 일방 당사자는 “본건 사업”的 자연 및 기타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DDP”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비 및 시스템, “DDP”的 건축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유지, 보수 책임을 진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1.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제품정보,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수행을 완료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본 계약 관련한 모든 자료(복사본 포함)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과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3년간 유효하다.

제14조 (공정의무)

1. 양 당사자 및 그 임직원은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상대방(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상대방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거나 거래상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 또는 본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 정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금전(상품권 등 금전대용품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
- 2) 통상적인 사회통념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3) 불건전 업소, 오락, 골프, 스키 등의 향응 및 접대를 하는 행위
- 4) 출장지원, 개인 휴가 지원, 사무실 비품 제공, 협찬/찬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5) 차용/매입/매도,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등 금전 또는 부동산 관련 모든 거래행위
- 6)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의 취득 기회를 제공하거나, 합작투자 또는 자신의 회사에 겸직하도록 하는 행위
- 7) 자기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관련업체의 주식을 제공 또는 투자도록 하거나 기타 재산을 공동 투자 또는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
- 8) 고용보장, 취업알선의 약속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는 행위
- 9) 기타 상대방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각 당사자는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 1) 일방 당사자의 임직원이 본조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큼 혐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일방 당사자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임직원으로부터 본조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제의 받거나 상대방 임직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대방의 관련부서에 즉각 통보한다.



제15조 (계약 해제, 해지)

1.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14일 전의 최고를 통해 그 시정을 구하고, 적절한 시정이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 2)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상호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 4)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5) 집단행동 등 노사문제 발생으로 계약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6) 제14조 (공정한 거래 의무)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가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이나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를 개시한 경우
 - 3) 중요재산에 가압류, 가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
 - 4)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 등을 하였을 때
3. 본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기타)

1. 불가항력

본 계약의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련 의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에 대하여 상호간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불가항력적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장기간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조항은 쌍방 서면합의로만 변경할 수 있다.

3. 양도 금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지위의 승계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한 자신의 법적 지위가 합병, 영업양수도, 경영위임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는 경우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탁인 등이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단, 본 계약의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의 해석 및 보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계약에 부속된 모든 첨부 서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분쟁 해결)

본 계약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유플러스” 와 “계약자”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1월 02일

“유플러스”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32

대표이사 권 영 수 (인)



“재단”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3

대표이사 이 근 (인)

